

평가결과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

-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,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 가능
- 이의신청 기간* : 평가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
 - * 기간산정 : 평가 결과 통보일 다음일로부터 기산하며,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,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함
- 평가내용 및 이의신청 접수문의 : 과제담당자
 - * 산업기술R&D정보포털(<https://itech.keit.re.kr>) > 연구 과제수행> 나의 과제수행 현황 > 과제명 클릭 >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문의
- 이의신청 방법 : 산업기술R&D정보포털(<https://itech.keit.re.kr>)에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 후 연구 과제수행 > 이의신청 - 주관연구개발기관 이의신청공문과 이의신청서*를 첨부**하여 제출
 - * 산업기술R&D정보포털(<https://itech.keit.re.kr>) > 알림·정보 > 규정 및 자료 > 표준서식 > “평가결과 이의 신청서” 검색 후 다운로드
 - ** 이의신청 공문과 이의신청서를 함께 업로드하며, 발송공문문서 번호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이의신청 공문 문서번호 기재
- 관련규정 :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2조(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) 제3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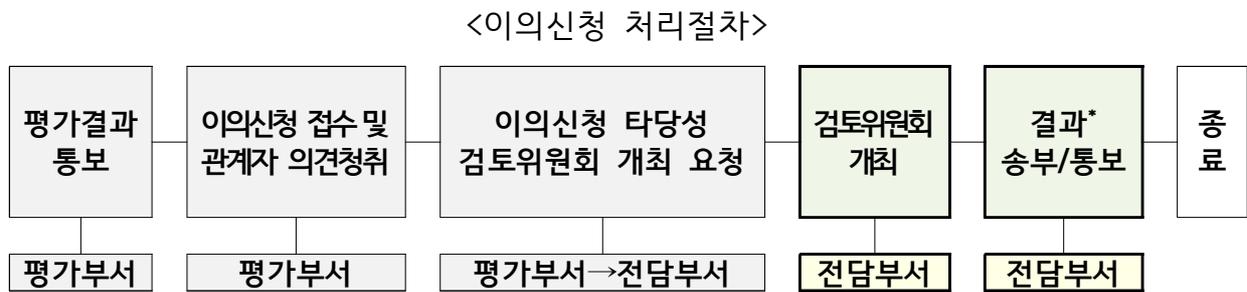
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**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**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(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,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)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단,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 개념평가, 단계평가, 최종평가, 특별평가 이의신청은 동 규정을 준용함

○ 이의신청 타당성 검토위원회 개최(전담부서 : 사업총괄팀)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이 평가방법 및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위원회로 심의결과 이의신청을 수용한 경우 '재심의' 미수용한 경우 '원안확정' 으로 판정함

○ 이의신청 처리 프로세스



* '원안확정' 대상은 종결처리하며, '재심의'가 필요한 대상은 평가부서에서 재심의 (재평가)위원회 개최